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회 의 년 월 일 : 2024년 7월 18일(목) 16:00
2. 회의소집통보일 : 2024년 7월 02일(화)
3. 회 의 장 소 : 경기드림캠퍼스 예원관 대회의실
4. 회 의 안 건 :
 - 1)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건)
5. 위 원 정 족 수 : 12명
6. 참 석 의 원 : 편성진의장, 김경실의원, 유록식의원(온라인), 김현우의원, 임용혁의원, 박정훈의원, 김건호 의원(온라인)
7. 결 석 의 원 : 박지빈의원, 김동주의원, 김원기의원, 주철환의원,
8. 회 의 내 용 :

편성진 의장이 출석을 점명하니 참석의원 7명으로 의원 정수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 안건을 상정하다.

편성진 의 장 : 바쁘신 업무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회의는 기 통보해 드린바와 같이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 회의를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회의자료 검토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배부 및 참석의원 회의자료 검토)

편성진 의 장 : 의원님들께서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보고, 안건인 예원예술대 학교 학칙 개정 심의(건)을 상정하겠으며, 참석하신 간사인 기획팀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차상원 간 사 : 회의자료 설명.

편성진 의 장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유록식 의 원 : 현재 본교의 가장 문제점은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으로 입학해서 학교를 다녀보니 자기와 학과가 맞지 않아 전과를 하려해도 1학년 2학년을 마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전과를 위해 자기와 맞지 않은 수업을 들어가며 몇 개월씩 기다리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재학생들의 이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부(과)에 관한 제도를 완화하여 학칙 개정(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의 원 : 우리 국제교류교육원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의 전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도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1년을 다니고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칙이 변경되면은 이런 학생들의 민원을 빠르게 해소 할 수 있어서 또한 변경하는것에 동의 합니다.

편성진 의 장 :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김건호 의 원 : 동의 합니다.

편성진 의 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참 석 의 원 : 네, 동의합니다.(참석의원 전원)

편성진 의 장 : 그럼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건) 은 원안대로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17조 2항 ‘전부(과)는 2학년 및 3학년, 4학년 학기 초에 한하며, 전부(과)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전부(과)는 학년 제한없이 학기 초에 한하며, 전부(과)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의결 및 자문내용

안건 1)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심의(건)

▷ 원안대로 자문 의결 함

신 구 문 대 비 표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현행	개정안	비고
제17조(전부(과)) ① ----- ② 전부(과)는 2학년 및 3학년, 4학년 학기 초에 한하며, 전부(과)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④----- ⑤-----	제17조(전부(과)) ① 현행유지 ② 전부(과)는 학년 제한없이 학기 초에 한하며, 전부(과)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현행유지 ④ 현행유지 ⑤ 현행유지	1.고등교육법 시행령 전과 허가 대상 학생의 범위확대 (제29조제3항 본문) 반영

2024년 7월 18일

작성자 : 대학평의원회 간사 차 상 원

대학평의원회 의장

편 성 진

의원

김 경 실

의원

유 록 식

의원

박 정 훈

의원

김 현 우

의원

김 건 회

의원

임 용 혁